

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박상돈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0년 10월 5일
-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6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,
- 이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용어를 정의(안 제2조)
- 문화콘텐츠산업의 중·장기 기본계획 수립(안 제3조)
-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원(안 제4조~제12조)
-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(안 제13조)
-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14조~제15조)
- 권한의 위임·위탁(안 제17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조에서는 문화콘텐츠와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의를,
 - 안 제3조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종합적인 중·장기 기본계획 수립·시행 사항을,
 -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문화콘텐츠 체험·교육, 시·군 지원, 제작지원, 창업지원, 투자유치, 기술개발, 해외교류,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,
 - 안 제13조에서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원을,
 -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,
 - 안 제17조에서는 권한의 일부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이 조례안은 현재 충청북도에서 각종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으나,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원 및 장기적인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
붙임: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. 끝.